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15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의한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7.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8.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u> <u>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u> <u>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①</u> <u>법 제29조의2제4항에 의한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목적</u> <u>2. 명칭</u> <u>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u>4. 업무 및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u> <u>5.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u> <u>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u>

	<u>방법</u> <u>7.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u> <u>8.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u> <u>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u> <u>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u> <u>②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려면</u> <u>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u> <u>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7482